

주·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주소(거소)불명, 이사, 수취인불명,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 . 2. 3

화 순 군



1. 공 고 대 상 : 주·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: 별첨
 2. 공 고 기 한(의견제출기한) : 2020.02.03.~2020.02.28.(25일)
 3. 의 견 제 출 처 :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(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번지 ☎061-379-3788~9)
 4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(전자문서포함), 구두진술(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)
 5. 기타 안내
 -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% 감경 되므로,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%가 감경됩니다.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,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.
- 1)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 - 2)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 - 3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제1급~제3급 장애인
 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~3급까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
 - 5) 미성년자

※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(☎ 061-379-3788~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반송이력 공고 적발 통보서 1부.